

2026년 동물자유연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사업 참여 모집 안내

1. 사업취지

- 지자체 보호소 1곳당 평균 400~500마리를 보호하는 등 과밀 상태이며 공간부족을 이유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일 발생, 이런 과밀한 지자체 보호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민간 동물보호소
- 국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54.7%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신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및 시설 보강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

2. 사업 목표

- 민간 보호시설의 법적 신고 요건 충족 지원
- 동물복지 향상 및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동물권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동반 성장

3.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6년 5월 28일 - 2026년 6월 10일
- 지원대상
 - ① 지자체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문을 수령한 단체
 - ② 지역 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보호/관리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로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따른 '신고'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려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① 보호시설 대표 및 운영진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② 타 단체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대표자 또는 사업 담당자가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④ 영리 목적을 띠고 운영하는 단체
 - ⑤ 보호시설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단체
 - ⑥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가 운영 중인 단체

4. 지원 규모 및 내역

- 지원규모
 - ① 총 2개소 지원 예정 (적격단체 없을 시 미선정)
 - ② 총 사업비의 70% 이내 (1억원 한도)
- 지원내역
 - ① 시설

사육시설과 그에 따른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 분뇨처리, 급수/급이, 차광막, 조명시설, CCTV 설치, 간판 등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② 보수

사육실 등 건사 시설과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시설 등의 보수(바닥공사, 펜스, 케이지 교체, 철망 바닥 평판 설치, 건물 페인트칠 등)

5. 사업 운영 일정 및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신청접수	5월 28일(목) - 6월10일(수)	전용링크 사용
1차 서류심사발표	6월 15일(월)	1차 선정단체 대상 개별연락
1차 선정단체 현장실사	6월 22일(월) -7월 1일(수)	단체와 협의하여 일정확정
2차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7월 2일(목)	단체대표 또는 사업 담당자 필참 (형식/분량 자유, 발표시간 10분)
최종 선정 발표	7월 8일(수)	적격단체 없을 시비 선정 가능
협약식	7월 15일(수)	선정 단체 대표 필참
사업 수행	2026년 12월 13일(일)	
현판식	시설 완공 후	선정 단체 대표 필참
결과보고 제출	2026년 12월 18일(금)	선정 단체 대표 필참
성과공유회	2026년 12월 29일(화)	선정 단체 대표 필참

※ 사업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지원 사업 서류 접수 전용 링크
<https://nanumkawa.fillout.com/t/2rwbmqS6jCus>

□ 선정 방법

- ① 1차 서류심사 : 신청단체 중 심사를 통해 80점 이상인 곳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②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 발표 점수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80점 이상인 곳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발표 자료 형식자유, 분량 5매 이내)
 - ※ 80점 이상 득점 또는 적격단체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현장실사는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일정 협의 후 진행 예정
 -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실사 및 프레젠테이션이 불가할 경우 2차 심사 불가. 이 경우 1차 서류심사 탈락 단체 중 80점 이상을 득하고 적합한 단체가 있을 시 2차 심사 대상으로 추가 선발함
- ③ 최종 선정 발표 : 2026년 7월 중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 단체 개별 연락

□ 심사 기준표

분류	항목	배점
사업 수행 능력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0
	단체 임직원 및 봉사자 등 적절한 보호소 운영/신고를 위한 인력 편제 여부	
단체 건전성	활동의 내용 및 지속성 등	20
	동물자유연대 방향성과 활동 내용의 부합성	
단체 지속가능성	향후 단체 및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	20
현장실사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위치 일치 여부, 부지, 건물 위치 등 사업 참여 적합성	20
위법 시설 해소	입지·건축상 위법이 해소되어 신고 완료 가능 여부	20

6. 사업 수행 및 지원

□ 협약 체결

- 협약 기간 : 2026년 12월 중
- 협약 내용 : 사업 기간, 사업비 지급, 사업비 정산 및 평가 운영 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 제출 서류 : 시설 현황, 예산 집행 계획서 등

□ 사업비 지급

- 지급 시기 : 3회 (1회차 30%, 2회차 40%, 3회차 30% / 지급 비율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가능)
- 지급 방법 : 제출 서류 확인 후 지급
- 제출 서류 : 신청서 내 안내

□ 사업 점검(모니터링) 및 중간결과 보고

- 점검 일정 : 분기별 1회
- 점검 내용 : 운영 중 애로사항 및 수행 과정 보완 필요 사항 등 의견 수렴

□ 사업 기간 연장

- 지원단체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업 기간 연장
- 사업 기간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자체 신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하되, 단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감면 등 조정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2026년 12월 18일
- 제출 서류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지자체 신고 결과 자료 등

□ 문의 : 동물자유연대 나눔사업팀

- ① 메일 : nanum@animalkorea.org
- ② 전화 : 02-6952-8029

[별첨]

2026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사업 협약안

동물자유연대(이하 '공'이라고 한다)와 _____(이하 '존'이라고 한다)은/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존'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위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협 약 명 : 2026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지원사업
- 협약금액 : 금 일억원정(100,000,000원)
- 협약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공'이 '존'에 활동 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과 '존'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공'과 '존'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1 (지원 범위 및 방법)

- ① '공'은 '존'이 제출한 신청서와 그 예산 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 ② 이때 '존'은 항목별 예산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계획서 예산 계획 외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공'과 '존'의 협의 후에 지원한다.
- ④ 지원금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의 2 (지원금 지급)

- ① 지원금은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
 - 1차: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사업비 관리 통장 사본 등록 및 제출 후 30% 지급
 - 2차: 중간 정산 보고 및 평가 후 2차 지원사업비 지급 승인 검토 후 40% 지급
 - 3차: 중간 정산 보고 및 평가 후 3차 지원사업비 지급 승인 검토 후 30% 지급
- ② 지급 비율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 3 (결과 보고 및 정산)

- ① '존'은 2026년 12월 18일까지 사업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존'은 사업 완료 후 잔여 지원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공'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 ① '존'은 협약 체결에 따른 '공'의 지원 사실을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월별 1회 이상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공유하여야 한다.
- ② 협약기간 중 1회 이상 사업 점검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은 협약기간 동안 '존'에게 지원한 내역 및 '존'이 제출한 중간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을 '공'의 사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존'은 협약기간 중 개최되는 중간공유회 및 협약 종료 후 개최되는 최종 성과공유회에 필참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공유회를 위해 '존'이 제출한 내용을 '공'의 사업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존'은 지원사업비 집행 내역을 후원회원 등에게 월별 1회 이상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필히 전체공개 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외 후원금 등의 사용내역은 공개를 권장한다.
- ⑥ '존'의 모니터링 결과 및 중간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 단계에 해당하는 '존'에게는 추가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⑦ '존'이 예산변경 신청 없이 기제출한 예산집행계획과 상이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공'은 사업비를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협조)

- ①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외 '공'이 '존'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② '존'의 활동 지역 내에서 피학대 동물, 유기 동물이 발생하여 '공'이 구조와 보호를 요청할 경우 '존'은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공'이 부담한다.
- ③ '공'은 '존'에 동물권 관련 캠페인 협력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공'과 '존'이 서로 합의한 경우
- ② 신청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존' 활동 내용이 형사 고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단체 활동의 위법성이 공론화된 경우
- ④ '존'이 단체 해산, 운영 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본 협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공'이 판단한 경우
- ⑤ '존'이 본 협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 ⑥ '존'이 정당한 사유 없이 4조, 5조 각호를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⑦ '존'이 후원금 사용을 포함한 단체 운영 관련해 비리, 각종 분란이 발생하는 경우
- ⑧ '존'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경우
- ⑨ '공'의 대표 또는 사업 담당자는 협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득하여 해지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로 협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단, 협약서 제7조(지원 금액의 환수) 항목은 '공'과 '존'의 협약 종료 시점에서 향후 5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7조 (지원 금액의 환수) 다음 각호의 경우 '공'은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며, '존'은 '공'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① 제6조의 제1항으로부터 제8항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한 경우
- ③ 지원금이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단순착오인 경우에는 과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한다.
- ④ 본 사업 지원금의 증빙서류를 타 지원사업 또는 타 모금내역 증빙으로 이중 활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 경우 해당 지원금액만 환수한다.
- ⑤ 환수 결정 시 '존'은 '공'에게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전 공유 및 상호 합의 하에 반환기일 연장이 가능하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

'공'과 '존'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 및 협약내용에 대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본 협약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9조 (양도의 금지)

'공' 또는 '존'은 본 협약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위임할 수 없다.

제10조 (협약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제11조 (협약의 해석 및 분쟁 해결)

- ①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공'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공'과 '존'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